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주항공 분야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그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과 인사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행)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상한, 임용요건, 임용절차, 응시요건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파견의 대상 및 기준, 겸직 허가의 기간과 절차 및 직권 면직 사유를 정하며,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안 제2조)

우주항공청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안 제3조)

- 1) 우주항공청장이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2) 과학기술 분야 등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3) 우주항공청장이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을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응시요건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4) 우주항공청 소속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보좌기관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임기제공무원의 파견의 대상 및 기준(안 제4조)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에 대한 행정지원, 관련 기관 간 특수업무의 공동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총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임기제공무원의 겸직 기간(안 제5조)

임기제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정함.

마. 임기제공무원의 전보에 대한 특례(안 제6조)

우주항공청장은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와 직급이 동일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의 운영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1)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함.
-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3)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사. 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안 제12조)

우주항공청장은 보안 및 재난 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보안관리 체계, 사업 참여 인력의 보안 등급 부여 방법 및 비밀엄수 준수 조치 등의 사항을 보안 및 재난 대책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안 및 재난 대책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도록 함.

아. 업무의 위탁(안 제13조)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한 우주항공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인재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의 추진 등의 업무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급별로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조(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 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우주항공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학위를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된 분야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

험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⑦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보좌기관(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파견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그 파견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파견의 대상·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제5조(검직 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검직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작성하는 때에 함께 검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직허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를 준용한다.

제6조(임기제공무원의 전보에 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도 불구하고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와 직급이 동일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직권 면직 사유)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지식·기술의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지식·기술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당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지식·기술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②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8조(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 외에 3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임명한다.

1.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 1명

2.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우주항공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

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윤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⑤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 및 재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보안 및 재난 대책을 확정하기 전에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건축물, 시설, 장비 및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보안 및 재난 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2. 보안 및 재난관리 부서 및 담당관 지정 등 보안관리 체계
3. 사업과 관련된 중요 문서의 유출·분실 시의 처리 절차 및 방법
4.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보안 등급 부여 방법 및 비밀엄수 준수 조치
5. 사업에 사용되는 전산 장비의 정보보호 대책
6. 지진, 홍수, 화재 등의 재난 시 시설의 방호, 자료 및 인력 등의 대피 방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 및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 중 이 영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업무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한 우주항공 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
 2. 법 제7조제4호에 따른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3. 법 제7조제6호에 따른 인재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의 추진
-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닌 자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	300만원
나.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천문연구원이 아닌 자가 한국천문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연 락 처	(044) 202 - 4691